

강원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휴가사용 및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및 각 부서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 사용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다. 공가’,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나)’ 에 따르면 원격지간(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 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24시간 전일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 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공가 사유 및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만 공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4시간 미만 소요될 경우 인사발령일 전일(前日)이 24시간 전일(全日)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자의 경우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주간근무 또는 비번편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만큼 조퇴(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19. 9.~현재) 동안 ○○소방서 휴가등 복무관리현황을 확인해 본 바 아래 [표 1]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사용 현황” 과 같이 총 10명이 부당하게 공가를 사용하여 초과근무수당 495,390원을 초과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1]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사용 현황

순번	대상자	공가사용일	휴가일수	휴가사유	초과근무수당 회수		
					서식입력	회수대상	금액(원)
계		-	-	-	-		495,390
1	소방○ ○○○	2019.10.08. (09:00~18:00)	1일	전일 당번근무	‘공가’	×	0
2	소방○ ○○○	2020.07.01. (18:00~09:00)	1.25일	인사발령 (○○→○○)	‘주’, ‘야공’	시간외 10시간	99,810
3	소방○ ○○○	2020.07.01. (18:00~09:00)	1.25일	인사발령 (○○→○○)	‘주’, ‘야공’	시간외 10시간	109,800
4	소방○ ○○○	2021.01.01. (18:00~09:00)	1.25일	인사발령 (○○→○○)	‘주’	×	0
5	소방○ ○○○	2021.01.01. (18:00~09:00)	1.25일	인사발령 (○○→○○)	‘주’, ‘야공’	시간외 10시간	110,920
6	소방○ ○○○	2021.09.27	1시간 30분	화재대응실기평가	‘당’	시간외 1시간	9,370
7	소방○ ○○○	2021.10.26. (18:00~09:00)	1.41일	인사발령 (○○→○○)	‘당’	시간외 10시간	100,830
						야간 1일(8시간)	26,880
8	소방○ ○○○	2021.11.14. (18:00~09:00)	1.41일	드론교육 입교	‘주연’	×	0
9	소방○ ○○○	2021.12.02.	2시간 15분	소방차량 안전운전 체험교육 참가	‘당’	시간외 2시간	18,740
10	소방○ ○○○	2022.04.24.	2시간	강원소방학교 교육입교	‘당’	시간외 2시간	19,04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연가가산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³⁾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소방서 종합감사대상기간(2019. 9.부터 현재까지)동안 연가 가산 내역을 확인해 본 바 아래 [표2] “연가가산 부적정 현황” 과 같이 총 8명이 법정연가일수에 연가미사용 또는 병가미사용 사유로 연가를 가산한 사실이 있다.

3)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표2] 연가가산 부적정 현황

순번	대상	연가가산 미적용 사유	연가산정				연가사용				연가보상비 회수	
			연도	법정	가산	계	사용			미사용	대상	금액 (원)
							사용	연가 보상	저축			
1	소방○ ○○○	병역휴직 (17.07.03.~19.03.20.)	2019	12	2	14	12일	2일	0일	0일	2일	105,910
2	소방○ ○○○	육아휴직 (18.07.01.~19.06.27.)	2019	11	2	13	9일	4일	0일	0일	2일	154,580
			2020	21	1	22	18일 2시간	3일	6시간	0일	1일	82,250
3	소방○ ○○○	가사휴직 (18.11.21.~19.01.03.)	2019	21	1	22	17일	5일	0일	0일	1일	106,340
			2020	21	1	22	11일 2시간	10일	6시간	0일	1일	111,280
4	소방○ ○○○	육아휴직 (19.02.09.~20.04.30.)	2020	14	1	15	8일 6시간	6일	2시간	0일	1일	59,760
5	소방○ ○○○	육아휴직 (19.02.18.~19.08.31.)	2020	21	1	22	9일	12일	0일	1일	1일	70,160
											* 21년 연가가산	
6	소방○ ○○○	육아휴직 (19.03.01.~20.02.28.)	2020	18	1	19	15일 6시간	3일	2시간	0일	1일	76,940
												2021
7	소방○ ○○○	육아휴직 (19.06.04.~19.12.03.)	2020	21	1	22	9일	12일	0일	1일	1일	93,630
											* 21년 연가가산	
8	소방○ ○○○	신규임용 (2019.06.04.)	2020	15	1	16	11 2시간	4일	6시간	0일	1일	53,170
계(8명)											13 일	993,88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부적정하게 공가를 사용하여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495,390원 및 연가를 부적정하게 가산한 8명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993,88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 급여 및 수당,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구조구급활동비) 초과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2호 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 “별표2의 6호4)” 에 의하면, 특수 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 제2호 지방자치단체 세출

4)

(단위: 원)

특정업무경비

구 분		대 상	월 액
공통 필수 항목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 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별표3”, “5-2. 특정업무경비(204-03)” 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원들의 복무관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휴직, 장기교육, 휴가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소방행정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9월~현재) 동안 아래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 과 같이 장기교육 입교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 2명에게 방호활동비 368,180원 및 구조구급활동비 216,58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표1] 특정업무경비 초과지급 현황

(단위: 원)

순번	대상자	사고내역	사고기간	년	월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받은금액	받을금액	받은금액	받을금액
계	방호활동비 반납(2명, 368,180원), 구조구급활동비 반납(2명, 216,580원)								
1	소방○○○○	장기교육 (인명구조사 2급)	21. 6.14.~ 21. 7.16.	2021	6	170,000	73,660	100,000	43,330
					7	170,000	82,250	100,000	48,380
				소계		340,000	155,910	200,000	91,710
				구분		반납	184,090	반납	108,290
2	소방○○○○	장기교육 (인명구조사 2급)	21. 6.14.~ 21. 7.16.	2021	6	170,000	73,660	100,000	43,330
					7	170,000	82,250	100,000	48,380
				소계		340,000	155,910	200,000	91,710
				구분		반납	184,090	반납	108,29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품 지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에는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를 “유관기관” 으로 정의하고 있고,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에서는 축의·부의금품 지급대상의 범위(결혼 또는 사망), 지급 대상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경우 지급대상의 범위 등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방서(○○○○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9.~현재) 아래 [표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품 집행 현황” 과 같이 총 52명에 대하여 2,600,000원의 축·부의금을 집행하였고, 그 중 유관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집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의용소방대장 6명에게 3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품 집행 현황

구분	계		소속직원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52	2,600,000	37	1,850,000	9	450,000	6	300,000
2019. 9월~	6	300,000	6	300,000	-	-	-	-
2020년	17	850,000	9	450,000	5	250,000	3	150,000
2021년	23	1,150,000	17	850,000	3	150,000	3	150,000
2022.1월~현재	6	300,000	5	250,000	1	50,000	-	-

※ 의용소방대장 축·부의금 세부지출 현황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2020. 2.17.	○○남성의용소방대장 자녀 결혼 축의금	50,000
2020.10. 7.	○○남성연합의용소방대장 병모상 조의금	50,000
2020.11.20.	○○의용소방대장 자녀 결혼 축의금	50,000
2021.10.20.	○○남·여의용소방대장 부친(시부)상 조의금	50,000
2021.12. 7.	○○의용소방대장 자녀 결혼 축의금	50,000
2021.12. 7.	○○남성의용소방대장 자녀 결혼 축의금	50,00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3. 급량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제공 대상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하고,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근무지의 국내출장자가 출장종료 후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출장여비의 식비와 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19. 9.~현재) 동안 ○○소방서로부터 급량비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 “관외출장여비와 매식비 중복지급 현황” 과 같이 총 5명에게 관외출장에 따라 식비 20,000원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하였 음에도 같은 날 야근 매식비를 중복 지급하였다.

[표2] 관외출장여비와 매식비 중복지급 현황

(단위: 원)

순번	일자	대상자	출장내역			매식비 집행
			출장지	목적	출장비수령	
1	'20. 1.28.	소방○ ○○○	원주시	2020년 재산변동신고 특별교육참석	56,200	7,500
2	'20. 7. 8.	소방○ ○○○	횡성군	정기평정 관련 업무담당자 회의참석	63,200	6,500
3	'20.10.13.	소방○ ○○○	횡성군	최근3년 근무·경력평정 검증작업	63,200	8,000
4	'20.10.20.	소방○ ○○○	춘천시	보안USB반납	71,200	8,000
5	'21.10. 7.	소방○ ○○○	춘천시	코로나19검체 긴급검사의뢰	71,200	8,000
계			-		325,000	38,00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지급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된 방호활동비 368,180원 및 구조구급활동비 216,58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주의·시정 요구

제 목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등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표1] 과 같이 총 256개소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소계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옥외
256	1	62	49	-	-	13	193	9	65	29	18	65	7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허가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⁵⁾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⁶⁾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물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장소⁷⁾(常置場所)는 위치·구조 및 설비 가운데 “위치”에 해당하므로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변경)할 때에는 상치장소도 포함하여 설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시 상치장소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5)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허가(변경)신청서
2. 완공검사필증 원본(변경허가)
3.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에 관한 도면
4. 구조설비명세표
5.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가사용승인신청 시)
6.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등

6)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

1.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험물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3.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및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인 것)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에 관한사항이 적합할 것

7) 상치장소 :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지 않을 때 주차해 두는 장소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6. 15. ~ 6. 24.) 중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 와 같이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 허가처리를 하면서 ○○○○○주유소의 경우 이동탱크저장소(00모0000, 허가번호 00-00000-000000호)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2019. 11. 4. 완공검사 시 상치장소 건축물 지붕이 샌드위치패널로 되어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았으며, ○○주유소의 경우 이동탱크저장소(00노0000, 허가번호 00-00000-000000호)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2020. 8. 27. 완공검사 시 허가사항의 상치장소에 아래 [그림1] 과 같이 상치장소 옆 1층의 건축물과의 거리가 2.8m(법정거리: 3m) 이내 임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등 2건의 설치·변경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2]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허가 현황

대상명 (차량번호)	구분	허가신청일	완공검사필증 교부일	허가번호	제조소등 구분	품 명	저장 용량
○○○○○주유소 (00모0000)	설치 허가	2019-11-04	2019-11-04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3,000ℓ
○○주유소 (00노0000)	변경 허가	2020-08-27	2020-08-27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3,000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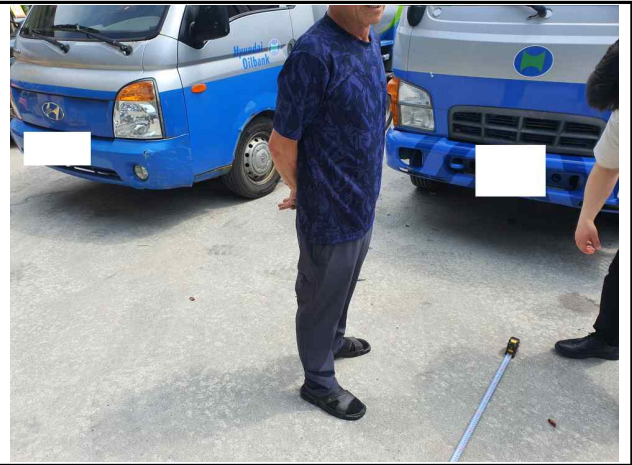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림1]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허가 부적정 사항

<p>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p>	<p>건축물 주요 구조부(샌드위치패널)</p>



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



건축물과의 거리(280cm)

2.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등의 완공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야 하고,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변경허가, 각종 신고수리, 제조소등의 소방검사 등 위험물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즉시 관련 사항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는 위험물 관련 규제와 관련된 업무처리 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변동사항의 입력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매년 실시하는 위험물 통계조사를 통하여 제조소등의 신규·변경허가,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현황관리 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6. 15. ~ 6. 24.)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변경허가, 각종 신고수리 내역에 대해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3] 과 같이 46개 대상에 대하여 총 73건(변경사항 미입력 6, 구조설비 명세표 미입력 37, 지위승계사항 미입력 1, 운송관리자 현황 미입력 24, 대상 미입력 1, 탱크유별현황 상이 4)을 위험물 제조소등 관련 정보를 미 입력하는 등 소방민원정보

시스템에 제조소 등의 현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 소홀 현황

(단위: 건)

계	변경사항 미입력	구조설비명세표 미입력	지위승계사항 미입력	운송관리자 현황 미입력	대상 미입력 (탱크유별현황)
73	6	37	1	24	5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 소홀 세부현황 별첨

그 결과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현황관리가 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

3.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교육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해당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는 국가기술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로 종사하기 전에 16시간의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종사한 이후에는 실무교육을 3년마다 1회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서장은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서(○○○○과)는 관할구역에 허가한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운송자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자격 보유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부적합 대상은 자격정지 및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안전원에 운송자의 교육인원 및 현황이 통보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소방본부에 제출하여 운송자의

실무교육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6. 15. ~ 6. 24.) 중 허가한 65개소의 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하여 운송자 명단 및 실무교육 이수현황 확인한 결과 아래 [표4] 와 같이 ○○주유소 등 5개소의 이동탱크저장소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채 운용하는 상황이며, ○○주유소 등 1개소의 이동탱크저장소는 교육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채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용한 사실이 있다.

[표4]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교육 부적정 현황

연번	대상명	차량번호	운송자	자격번호	최종교육일자	유효기간
1	○○주유소	강원00머0000	-	-	-	-
2	○○석유	강원00머0000	-	-	-	-
3	○○주유소	00더0000	-	-	-	-
4	○○○○에스	00루0000	-	-	-	-
5	○○	00거0000	-	-	-	-
6	○○주유소	강원00머0000	○○○	0000-00-00-0-000000	19-05-09	22-05-08
7	○○주유소	00누0000	○○○	0000-00-00-0-000000	19-05-09	22-05-08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교육 받은 자의 운송여부를 알지 못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초동 조치를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

○○소방서 ○○○○과 소방○ ○○○는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모 0000) 설치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야 함에도 완공검사 시 상치장소 건축물 지붕이 샌드위치패널로 되어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았고, “○○주유소(00노0000) 변경허가”는 상치장소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확보되지 않는 등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변경허가, 각종 신고수리한 46개 대상에 대하여 총 73건(변경사항 미입력 6, 구조설비명세표 미입력 37, 지위승계사항 미입력 1, 운송관리자 현황 미입력 24, 대상 미입력 1, 탱크유별현황 상이 4)을 위험물 제조소 등 관련 정보를 미 입력하는 등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제조소 등의 현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주유소 등 5개소의 이동탱크저장소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채 운용하는 상황이고 ○○주유소 등 1개소의 이동탱크저장소는 교육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채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용하는 등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교육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험물안전관리를 위배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의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소방○ ○○○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주유소, ○○주유소의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에 대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②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변경허가, 각종 신고수리한 사항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시기 바라며, ③ 관할구역 내의 운송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 소홀 현황

연번	구분	대상	허가번호	미입력사항
1	제조소	○○○(주)	00-00000-000000	변경사항, 구조설비명세표
2	옥내	○○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3	옥외탱크	○○○○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4	옥외탱크	○○○○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5	이동탱크	○○○주유소 (00두0000)	00-00000-000000	운송관리자 현황
6	이동탱크	○○○○주유소 (00도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7	이동탱크	(주)○○ (00거0000)	00-00000-000000	운송관리자 현황
8	이동탱크	○○○○○○○조합 (00모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9	이동탱크	○○○○○○○○○○○지점 (00모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10	옥외	○○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11	옥외탱크	○○○○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12	옥외탱크	○○제0000부대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13	주유취급소	제00보병사단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14	옥외탱크	제00보병사단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15	옥외탱크	제00보병사단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16	옥외탱크	제00보병사단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17	옥외탱크	제00보병사단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18	주유취급소	○○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19	옥외탱크	○○○○이	00-00000-000000	변경사항, 구조설비명세표
20	주유취급소	○○○○주유소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21	주유취급소	○○주유소	00-00000-000000	변경사항, 구조설비명세표
22	주유취급소	○○주유소	00-00000-000000	탱크유별현황 상이, 변경사항, 구조설비명세표
23	이동탱크	○○○○○○○○○○○점 (00조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24	이동탱크	○○○○주유소 (00조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25	이동탱크	○○운수 (경남00아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26	이동탱크	○○주유소 (00거0000)	00-00000-000000	지위승계, 변경사항, 운송관리자 현황
27	이동탱크	○○○주유소 (00더0000)	00-00000-000000	운송관리자 현황
28	이동탱크	○○주유소 (00노0000)	00-00000-000000	운송관리자 현황
29	이동탱크	○○제0000부대 (000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30	이동탱크	○○제0000부대 (000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31	이동탱크	○○주유소 (00구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32	이동탱크	○○주유소 (00나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33	이동탱크	○○제0000부대 (000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34	옥외탱크	○○교회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35	주유취급소	○○○주유소	00-00000-000000	탱크유별현황 자료 상이, 구조설비명세표
36	이동탱크	○○제0000부대 (00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37	이동탱크	○○제0000부대 (000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38	이동탱크	○○○○○○○조합 (00조0000)	00-00000-000000	운송관리자 현황
39	이동탱크	○○○○주유소 (00조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40	이동탱크	○○주유소 (00소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41	이동탱크	○○주유소 (00주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42	이동탱크	○○○○○○○○○점 (00모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43	이동탱크	○○○○○○○○○점 (00조0000)	00-00000-000000	구조설비명세표, 운송관리자 현황
44	주유취급소	○○○○○○○조합	00-00000-000000	탱크유별현황 자료 상이
45	주유취급소	○○○○○○○○○○○점	00-00000-000000	탱크유별현황 자료 상이, 변경사항
46	이동탱크	○○주유소 (000부0000)	00-00000-000000	대상

강 원 도

주의·시정(회수) 요구

제 목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관리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단(前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 [표1]과 같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1]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남성대		지역대		여성대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2019년	23	498	10	248	3	42	10	208
2020년	23	450	10	230	3	39	10	181
2021년	23	446	10	231	3	36	10	179
2022년	23	446	10	224	3	32	10	19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간 미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에게는 기본교육⁸⁾으로 36시간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에게는 연간 12시간의 전문교육⁹⁾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¹⁰⁾을 연간 24시간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2]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2년 내에 기본교육을 1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교육은 연간 6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해당 대원을 해임 하도록 되어 있다.

[표2]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이수 최소시간

<p>□ 개별 이수교육 시간의 50% 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대원: 임명된 후 2년 이내 기본교육 36시간 → 기간 내 18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 사유 ○ 기본교육 이수 대원(전담대 제외): 전문교육 연 12시간 → 연간 6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 사유 ○ 기본교육 이수 전담의용소방대원: 월 2시간 이상(연 24시간) → 연간 12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 사유

따라서 ○○소방서(○○○○과, ○○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임기준이 되는 교육이수 최소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 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수난구조, 산악구조,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전문교육을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 연간 24시간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교육훈련을 실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6. 15. ~ 6. 24.) 중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의용소방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이 해임기준(기본교육 18시간, 전문교육 6시간)에 해당하는 33명 중 32명에 대하여 해임을 하였으나, 1명은 해임 조치하지 않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 현황

연번	의소대명	일반전담	성 명	임 용 일	해당연도	기본교육 이수시간	전문교육 이수시간	기준 미달시간	해 임 일
1	○○○○전문대	일반	○○○	2006-11-29	2019	이수	0	6	20-01-17
2	○○○○전문대	일반	○○○	2016-05-01	2019	이수	0	6	20-01-17
3	○○지역대	일반	○○○	2018-06-01	2020	16	해당없음	2	미조치
4	○○여성대	일반	○○○	2015-12-01	2019	이수	4	2	19-11-30
5	○○여성대	일반	○○○	2014-04-01	2019	이수	4	2	20-03-18
6	○○○남성대	일반	○○○	2007-03-19	2019	이수	4	2	20-01-22
7	○○○여성대	일반	○○○	2008-01-01	2019	이수	0	6	20-01-22
8	○○○여성대	일반	○○○	2010-01-25	2019	이수	2	4	20-01-22
9	○○○남성대	일반	○○○	1997-07-24	2019	이수	2	4	20-06-15
10	○○○남성대	일반	○○○	2002-09-26	2019	이수	2	4	20-03-18
11	○○○남성대	일반	○○○	2002-09-26	2019	이수	0	6	20-01-22
12	○○○남성대	일반	○○○	2007-03-20	2019	이수	0	6	20-06-15
13	○○○남성대	일반	○○○	2012-05-29	2019	이수	0	6	20-01-22
14	○○○남성대	일반	○○○	2009-09-08	2019	이수	0	6	20-01-22
15	○○○여성대	일반	○○○	2011-03-08	2019	이수	2	4	20-01-22
16	○○○여성대	일반	○○○	2014-03-01	2019	이수	2	4	20-01-22
17	○○○여성대	일반	○○○	2015-02-01	2019	이수	2	4	20-01-22
18	○○지역대	일반	○○○	2011-04-05	2020	이수	0	6	21-01-01
19	○○○남성대	일반	○○○	2005-06-01	2020	이수	2	4	21-01-01
20	○○여성대	일반	○○○	2008-01-01	2020	이수	4	2	21-01-01
21	○○남성대	일반	○○○	2017-06-13	2020	이수	0	6	21-01-01
22	○○남성대	일반	○○○	2002-04-01	2020	이수	0	6	21-01-01
23	○○남성대	일반	○○○	2016-10-01	2020	이수	0	6	21-01-01
24	○○지역대	일반	○○○	1999-03-23	2021	이수	0	6	21-12-31
25	○○지역대	일반	○○○	1995-03-10	2021	이수	0	6	21-12-31
26	○○남성대	일반	○○○	2016-03-01	2021	이수	0	6	21-12-31

27	○○○남성대	일반	○○○	2011-01-24	2021	이수	0	6	21-12-31
28	○○○여성대	일반	○○○	2018-03-05	2021	이수	0	6	21-12-31
29	○○○여성대	일반	○○○	2014-03-01	2021	이수	0	6	21-12-31
30	○○남성대	일반	○○○	2009-02-04	2021	이수	4	2	21-12-31
31	○○남성대	일반	○○○	2010-02-22	2021	이수	0	6	21-12-31
32	○○남성대	일반	○○○	1999-01-13	2021	이수	0	6	21-12-31
33	○○○남성대	일반	○○○	1999-04-13	2021	이수	4	2	21-12-31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용소방대원 중 일부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보조 활동이 부실 해 질 우려가 있다.

2.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교육 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업무 등 제7조¹¹⁾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

11)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록부를 제출받아 교육 훈련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활동기록부를 제출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시간을 확인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22. 6. 15. ~ 6. 24.) 중 2019년부터 2022년 5월 까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여성의용소방대 ○○○ 외 24명(14건)에게 지급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 하지 않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의용 소방대 수당 및 여비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4]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 중복지급 현황

순번	의소대명	활동대원	활동일시			확인결과	중복지급
			정기교육	소집활동 1	소집활동 2		
1	○○ 여성대	○○○	2019.12.08.(일) 19:00~21:00	2019.12.08.(일) 20:00~22:00		- 20:00~21:00(1시간 중복) - 정기교육 / 대기근무	여비 10,000원
		○○○	2019.12.08.(일) 19:00~21:00	2019.12.08.(일) 20:00~22:00		- 20:00~21:00(1시간 중복) - 정기교육 / 대기근무	여비 10,000원
2	○○ 여성대	○○○	2020.01.12.(일) 19:00~21:00	2020.01.12.(일) 20:00~22:00		- 20:00~21:00(1시간 중복) - 정기교육 / 대기근무	여비 10,000원
		○○○	2020.01.12.(일) 19:00~21:00	2020.01.12.(일) 20:00~22:00		- 20:00~21:00(1시간 중복) - 정기교육 / 대기근무	여비 10,000원
3	○○ 여성대	○○○		2020.11.04.(수) 14:00~16:00	2020.11.04.(수) 15:00~17:00	- 15:00~16:00(1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소집수당 11,800원
		○○○		2020.11.04.(수) 14:00~16:00	2020.11.04.(수) 15:00~17:00	- 15:00~16:00(1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소집수당 11,800원
		○○○		2020.11.04.(수) 14:00~16:00	2020.11.04.(수) 15:00~17:00	- 15:00~16:00(1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소집수당 11,800원
4	○○ 남성대	○○○	2021.03.20.(토) 17:00~19:00	2021.03.20.(토) 16:00~18:00		- 17:00~18:00(1시간 중복) - 정기교육 / 예방순찰	여비 10,000원
		○○○	2021.03.20.(토) 17:00~19:00	2021.03.20.(토) 16:00~18:00		- 17:00~18:00(1시간 중복) - 정기교육 / 예방순찰	소집수당 11,800원
5	○○ 여성대	○○○		2021.04.14.(수) 14:00~16:00	2021.04.14.(수) 13:00~16:00	- 14:00~16:00(2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수집수당 23,800원
		○○○		2021.04.14.(수) 14:00~16:00	2021.04.14.(수) 13:00~16:00	- 14:00~16:00(2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수집수당 23,800원
6	○○	○○○	2021.05.14.(금)	2021.05.14.(금)	2021.05.14.(금)	- 14:00~17:00(3시간 중복)	수집수당

	여성대	○○○	13:00~15:00 2021.05.14.(금) 13:00~15:00	15:00~17:00 2021.05.14.(금) 15:00~17:00	14:00~17:00 2021.05.14.(금) 14:00~17:00	- 정기교육 / 캠페인 / 노인돌봄 - 14:00~17:00(3시간 중복) - 정기교육 / 캠페인 / 노인돌봄	수집수당 35,700원
7	○○ 여성대	○○○		2021.06.12.(토) 13:00~15:00	2021.06.12.(토) 14:00~16:00	- 14:00~15:00(1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소집수당 11,900원
		○○○		2021.06.12.(토) 13:00~15:00	2021.06.12.(토) 14:00~16:00	- 14:00~15:00(1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소집수당 11,900원
8	○○ 여성대	○○○		2021.06.19.(토) 14:00~15:00	2021.06.19.(토) 14:00~16:00	- 14:00~15:00(1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소집수당 11,900원
		○○○		2021.06.19.(토) 14:00~15:00	2021.06.19.(토) 14:00~16:00	- 14:00~15:00(1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소집수당 11,900원
9	○○ 여성대	○○○		2021.06.19.(토) 17:00~19:00	2021.06.19.(토) 15:00~18:00	- 17:00~18:00(1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소집수당 11,900원
		○○○		2021.06.19.(토) 17:00~19:00	2021.06.19.(토) 15:00~18:00	- 17:00~18:00(1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소집수당 11,900원
10	○○ 여성대	○○○		2021.11.20.(토) 14:00~16:00	2021.11.20.(토) 13:00~16:00	- 14:00~ 6:00(2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수집수당 23,800원
		○○○		2021.11.20.(토) 14:00~16:00	2021.11.20.(토) 13:00~16:00	- 14:00~ 6:00(2시간 중복) - 캠페인 / 노인돌봄	수집수당 23,800원
11	○○ 여성대	○○○		2021.11.21.(일) 12:00~14:00	2021.11.21.(일) 13:00~15:00	- 13:00~14:00(1시간 중복) - 방역활동 / 노인돌봄	소집수당 11,900원
12	○○ 남성대	○○○		2021.11.21.(일) 20:00~23:00	2021.11.21.(일) 21:00~00:00	- 21:00~23:00(2시간 중복) - 동절기대기근무 / 화재출동	수집수당 23,800원
13	○○ 여성대	○○○		2021.11.22.(월) 14:00~16:00	2021.11.22.(월) 14:00~17:00	- 14:00~16:00(2시간 중복) - 방역활동 / 노인돌봄등	수집수당 23,800원
14	○○ 여성대	○○○		2021.12.01.(수) 14:00~16:00	2021.12.01.(수) 13:00~16:00	- 14:00~16:00(2시간 중복) - 방역활동 / 캠페인	수집수당 23,800원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단(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20. 08. 11.부터 2022. 01. 16.까지 의용소방대 업무담당자로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된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 중 12건 21명에 대해 지급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여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간 기준미달로 해임처분 등 조치하지 않은 1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향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이 미달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교육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여비 및 소집수당 418,5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